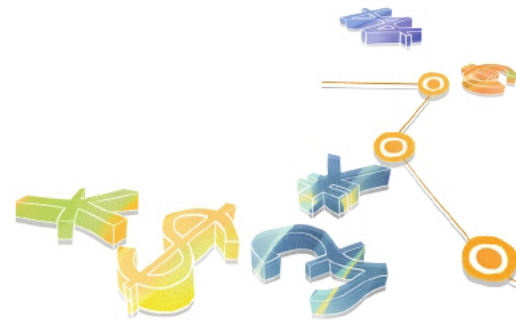


NASC

Volume.
News Letter
www.nasc.or.kr

05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을 맞이하며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오피니언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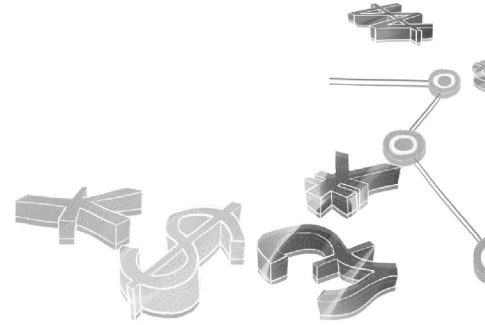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Volume. 05
News Letter
www.nasc.or.kr



INDEX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을 맞이하며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오피니언

공지사항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을 맞이하며

편호범 소장

지난 7월 26일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 제1주년 기념식 가운데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의 인사말을 옮깁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7월 26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귀빈을 모시고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우 걸음마 연습하는 모습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첫뚫을 맞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아니 오히려 작은 조직이기에 저희 센터로서는 오늘이 더욱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짧지만 긴 한 해였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출발부터 성과중심 국정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 각 부문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고 정부회계에 있어서도 기업회계방식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 줄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여 결국 국가회계기준센터가 태어난 것입니다.

운영비용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기획재정부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설립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처음에 소규모 인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1명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연구원과 2명의 행정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연구 및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초기에는 사회기반시설 재무제표 계상방안과 연금충당부채 준칙 및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감가상각방법 마련 등 국가회계기준센터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획재정부를 지원한 결과 산적한

현안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어 나갔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퇴근시간을 잊고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표가 되어 선을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짧지만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 재무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센터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넘어 산이 있듯이 새 회계제도가 잘 정착된 후에는 센터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 지원을 넘어 명실공히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등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난 일년간 노력해 왔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전문적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점증하고 있는 국가회계의 투명성 요구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으로 향후 우리 센터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관련 싱크 탱크의 일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을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늘 우리 센터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건승 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오미경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71 / e-mail_mkoh@kicpa.or.kr

01

인도네시아 감사업무 담당자 센터 방문 (6.9)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각 기관을 방문하고 견학하였다. 특히 6월 9일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도적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를 재정 전 부문에 도입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방문하여 양국의 재정부문 회계선진화를 위한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금번 방문 시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은 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연혁, 현황, 역할 및 향후추진계획과 함께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방문단 일행은 재정부문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대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 및 업무수행방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하며 많은 질문을 하였고, 특히 도입과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 기념식 (7.26)

국가회계기준센터는 7월 26일 창립 제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및 연구원,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 발자취를 소개하고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의 도입으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도와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준칙 마련,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재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 지침 개정안 마련,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방안 마련 지원,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 마련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국가회계결산업무를 지원하는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제도개선과 실무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이날 국가회계기준센터 편호범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국회에 처음 제출되는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과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 지속적인 활용방법 연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국가회계기준센터 제2차년도 소장으로 편호범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이 재선임되었다. 이로서 편호범 소장은 한 해 동안 국가회계제도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다시 한 번 앞장서게 될 것이다.

03

사회기반시설 워크숍 개최 (6.14)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지난 6월 14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사회기반시설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회계 사회기반시설 실사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이라는 주제하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국유재산과, 국가회계기준센터,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9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실사현황에 대해 알리고 2011년 재무제표 계상을 위해 업무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담당자들로부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관련내용 p.25. 『사회기반시설 실사추진 현황 및 주요현안』 워크숍(6.14)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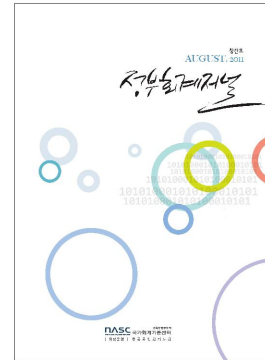
04

정부회계저널 창간호 발간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정책 및 회계제도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일 국가회계 전문학술지인 「정부회계저널」을 발간한다.

이번 「정부회계저널」 창간호에는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의 인터뷰,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고문을 비롯하여 각계 국가회계전문가들의 기고문 및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논문공모를 통해 접수한 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안진회계법인 이사이자 행정학 박사인 허웅 회계사(논문주제: 발생주의 정부회계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의 논문이 선정되어 본 저널에 게재되었다. 허웅 회계사는 논문을 통해 정부회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거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기업회계 및 국가별 정부회계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면서 앞으로 발생주의 정부회계는 회계처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도 중요하지만, 3권분립의 정부특성을 정부회계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측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회계저널」은 계속해서 발행될 예정이며, 각계의 다양한 기고문 및 논문을 상시 접수하여 정부회계 전문학술지로서 정부기관, 국회, 학계,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김세화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73 / e-mail_sehwakim@kicpa.or.kr

01

제15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6.29)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부차관)가 6월 29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회계준칙 제정안, 보증회계준칙 제정안,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제정안의 세 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 중 보증회계준칙 제정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보험회계준칙 제정안은 부채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02

보증회계준칙(안) 의결

「보증회계준칙(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보증충당부채의 인식과 평가, 보증수익 및 보증비용의 인식 그리고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증회계준칙(안)은 총 3회에 걸친 실무 TF 회의를 통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채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1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심의·의결되었다. 동 「보증회계준칙(안)은 각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제정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는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지침(안)」 문단19에서 정한 건축물 가격 평가 중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가격평가에 필요한 세부 실무적용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내용연수의 산정방법, 재평가가액 산정 근거자료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의 제정을 위해 자산회계처리 소위원회(6.22)의 의결을 거쳐 제1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심의·의결되었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정지웅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68 / e-mail_jwng113@kicpa.or.kr

01 미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AAPC, “TR 13.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추정에 관한 적용지침” 발표

2011년 6월 1일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산하 정책소위원회인 회계감사정책위원회(Accounting and Auditing Policy Committee: AAPC)는 연방재무회계실무지침서(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Technical Release: TR) 제13호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추정에 관한 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e for Estimating the Historical Cost of General Property, Plant & Equipment)”을 제정·발표했다.

TR 13호는 연방재무회계기준서(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FAS) 제6호, 제23호 및 제35호에 적용되는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추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일반유형자산 평가 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추정방법의 유형 및 문서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지침서에 수록된 예시들은 SFFAS 제35호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SFFAS 제35호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은 개정 SFFAS 제6호의 자산 인식 및 측정 관련 조항에 따른 역사적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유형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역사적 원가의 합리적 추정치를 사용하여 일반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http://fasab.gov/pdf/aapectr13.pdf> 참조)

GASB,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접근법”에 대한 예비적 견해 발표

미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11년 7월 11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접근에 대한 예비적 견해(Preliminary Views)를 발표

하여, 재무제표 상의 각 항목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인식)되며 보고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측정법)에 관한 GASB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식 개념은 측정 초점 및 회계처리의 근거라는 재무제표의 두 가지 관점을 포함하는데, 특정 재무제표에서 측정 초점은 어떠한 항목이 자산, 부채 및 기타 구성요소로 동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의 근거는 각 항목이 언제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본 예비적 견해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혹은 “단기 재무 자원(near-term financial resources)” 측정 초점을 사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개념체계를 제안한다. 개념적 관점에서 볼 때 “단기 재무 자원” 측정 초점은 정부기금 재무보고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현행 재무 자원(current financial resources)” 측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

GASB는 본 예비적 견해를 통해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관한 접근을 다루고 있으며, 자산 및 부채의 특성에 따라 (1) 자산의 취득 혹은 부채의 발생 당시 가치를 반영한 금액 또는 (2) 재측정 후 보고기준일 재평가된 가치를 반영한 금액 중 어느 금액이 재무제표 상에 반영되어야 하는 지 그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본 예비적 견해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은 2011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 2011년 10월 3번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예비적 견해의 전문은 www.gasb.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영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FRAB, 정부부문 재무제표의 IFRS로의 성공적 전환 완료 발표

영국 재무보고자문위원회(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 : FRAB)는 2011년 6월 30일 14차 연차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보건기구 및 위임정부(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IFRS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FRAB은 동 보고서에서 2009~2010회계연도부터 IFRS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최초로 IFRS 기반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과를 보며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캐서린 시언스(Kathryn Cearns) FRAB의장에 따르면 최초의 IFRS 기반 2009~2010회계연도 통합정부재무제표(Whole of Government Accounts)가 공표될 것이며 이는 의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책임 및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호주 공공부문 회계 동향

AASB, “ED 212. 정부부문에 속한 비영리기관” 공개초안 발표

2011년 6월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개초안(Exposure Draft) 212호 정부부문에 속한 비영리기관(Non-for-Profit Entities within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을 발표하여 정부부문에 속한 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 규정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번 공개초안은 호주회계기준위원회가 종전에 제안한 “공개초안 174호 정부부문에 속한 기관의 일반회계기준(GAAP)과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간의 일관성 촉진을 위한 호주회계기준 수정”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2009년 6월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호주회계기준위원회는 오로지 GAAP과 GFS 간의 일관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재무보고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개정사항이 비용 대비 효익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호주회계기준원은 본 공개초안을 통해 GAAP의 인식 및 측정 시 선택의 폭을 줄이고 표시 및 공시를 통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이며, 2009년 9월 중에 2차례 공개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박보희 / 김세화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7 / e-mail_cpabo@kicpa.or.kr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적용 및 회계처리>

01 머리말

용자회계준칙 상 용자사업이란 시장 금리로 자금의 대출이 어려운 농어민, 중소기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용자사업 중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 보다 저리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특정 용자사업과 관련한 회계처리 세부사항은 용자회계준칙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용자회계준칙에서는 용자금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시점마다 이를 평가하여 재무제표 상 용자금 잔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9회계연도부터 모든 국가재정 부문에 도입되어 업무담당자들의 준칙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어 용자회계준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용자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를 돕기 위해 용자금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개념과 그 회계처리를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02 용자금 및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정의 및 계정분류

용자금 및 용자보조원가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용자회계준칙 상에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의를 먼저 확인해보고자 한다.

① 용자금 및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정의

용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의미한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용자금의 원금과 용자금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의미한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구해야 하며, 이는 대손충당금적인 성격과 시간가치적인 성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용자사업에서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여금(용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용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며 관련 회계처리는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동일하다.

② 관련 계정과목 및 재무제표

I	II	III	IV	V
자산	유동자산	단 기 대 여 금	정 부 외 단 기 대 여 금	단 기 전 대 차 관 대 여 금 단 기 용 자 금
		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단 기 용 자 금 대 손 충 당 금 단 기 용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투자자산	장 기 대 여 금	정 부 외 장 기 대 여 금	장 기 전 대 차 관 대 여 금 장 기 용 자 금
		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장 기 용 자 금 대 손 충 당 금 장 기 용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03 용자금 및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 및 사례

용자회계준칙 적용 대상 용자금의 회계처리와 채무불이행의 가정이 변할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융자금,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융자보조비용의 인식

융자금의 원금과 융자금의 순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이때, 융자금의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수취할 총 금액을 동 융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에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 유효이자율은 실행 당시 정부가 수취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융자보조비용에서 차감한다.

융자금의 순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시간요소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채무불이행요소는 아래 요소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채무불이행비용의 최초 측정과 이후 평가 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i) 과거 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ii)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iii) 차입자의 재무상태
- iv)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사례 1> 융자금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회계처리

융자사업의 가정

- 20X1년도 말에 국가회계실체는 융자프로그램으로 총 원금 10,000원의 융자금을 실행하였다.
- 이 융자금은 하나의 유사한 위험유형 군(群)으로서 융자조건은 만기 5년, 표면 이자율 4%이다.
- 융자계약에 의하면 상환조건은 5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다.
- 융자금이 지급된 회계기간에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국채의 평균이자율은 6%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20X4년부터 20X6년도까지 원리금의 30%로 추정된다.
- 융자계약에 의하면 5년 동안 매년도 말에 2,2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산출과정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순 현재가치를 구해야하므로 아래와 같이 미래현금흐름을 계산해보도록 한다.

〈표 1〉 상환 스케줄

(단위 : 원)

FY	연간지급액(a)	이자(b)	원금(c)	기말 대출잔액(d)
20X1				10,000
20X2	2,246	400	1,846	8,154
20X3	2,246	326	1,920	6,234
20X4	2,246	249	1,997	4,237
20X5	2,246	169	2,077	2,160
20X6	2,246	86	2,160	-

용자계약에 의하면 5년 동안 매년도 말에 2,2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표 1〉에서 연간 지급액은 (a)열에 표시되어 있다. (b)열의 금액은 각 회계기간의 기초잔액에 표시이율 4%를 곱한 금액과 동일하다. (c)열의 금액은 원금 상환액인데 (a)열의 금액에서 (b)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d)열의 금액은 각 회계기간의 기말 원금 잔액인데 이 금액은 기초잔액에서 (c)열에 나타난 그 기간의 원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매년 수령해야 할 용자금의 원리금은 2,246원이며 20X4년부터 20X6년까지 3년간 원리금의 30%인 674원이 채무불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X1 회계연도 기준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는 7,858원이다.

〈표 2〉 20X1회계연도 말에 할인된 추정 현금흐름

(단위 : 원)

FY	원금 및 이자	채무불이행 손실	순현금유입액
20X1	-	-	-
20X2	2,246	-	2,246
20X3	2,246	-	2,246
20X4	2,246	(674)	1,572
20X5	2,246	(674)	1,572
20X6	2,246	(674)	1,572
PV(6% 이자율)	9,461	(1,603)	7,858

용자금에 대한 예상 현금흐름은 채무불이행 발생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용자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 현재가치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손실은 20X4년부터 20X6년까지 3년간 원리금의 30%로 예상되며, 채무불이행손실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채무불이행 손실 구분

(단위 : 원)

FY	원금채무불이행손실(*1)	이자채무불이행손실(*2)	합계
20X1	-	-	-
20X2	-	-	-
20X3	-	-	-
20X4	599	75	674
20X5	623	51	674
20X6	648	26	674

(*1) '표 1: 상환스케줄 원금금액' * 30%

(*2) '표 1: 상환스케줄 이자금액' * 30%

〈20X1년말〉

- 용자금 지급시 -

차) 용 자 금 10,000 대) 국 고 금 10,000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시 -

차) 용 자 보 조 비 용 2,142 대) 용자보조원가충당금(*1) 2,142

(*1) 보유 중인 용자금의 원금 10,000원과 그 현재가치 7,858원와의 차액 2,142원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위 사례에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이자보조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례 2> 용자보조비용 구성

〈표 4〉 용자보조비용 구성내역

(단위 : 원)

이자보조비용(*)	539
채무불이행비용	1,603
기타보조비용	-
총용자보조비용	2,142

(*) 이자보조비용 계상 내역

(단위 : 원)

FY	기말대출잔액	기회이자비용(*1)	이자수입(*2)	이자보조비용 ((*1)-(*2))
20X1	10,000	-	-	
20X2	8,154	600	400	200
20X3	6,234	489	326	163
20X4	4,237	374	249	125
20X5	2,160	254	169	85
20X6	-	130	86	44
PV(6% 이자율)				539

(*1) 전기말 대출잔액 * 6%(국채이자율)

(*2) 전기말 대출잔액 * 4%(표면이자율)

③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시

일단 용자금을 지급하고 나면, 용자금과 관련한 예상 현금흐름은 용자대상사업 및 사업자의 신용 등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용자금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 순현재가치 또한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용자회계준칙에서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시 조기상환, 채무불이행, 체납 및 회수를 포함한 현금유출·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결과 발생하는 증감액은 당기 용자보조비용에서 가감하고,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 차감 후 잔액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례 4> 채무불이행 가정 변할 경우

용자사업의 가정

- 용자금에 대한 기본가정은 예1과 동일하다.
- 20X2년말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 1) 채무불이행이 20X4회계연도 대신에 20X3회계연도부터 발생할 것이며,
 - 2) 유입될 현금흐름의 30%대신 60%가 20X3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을 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자금의 상환스케줄은 <표 6>과 같다.

<표 6> 상환 스케줄

(단위 : 원)

FY	연간지급액(a)	이자(b)	원금(c)	기말 대출잔액(d)
20X1				10,000
20X2	2,246	400	1,846	8,154
20X3	2,246	326	1,920	6,234
20X4	2,246	249	1,997	4,237
20X5	2,246	169	2,077	2,160
20X6	2,246	86	2,160	-

매년 수령해야 할 용자금 원리금은 2,246원이나 20X3년부터 20X6년까지 4년간 원리금의 60%가 채무불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X2년 말 기준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는 3,113원이다.

<표 7> 20X2 회계연도 말 재추정 할인 현금흐름

(단위 : 원)

FY	원금 및 이자	채무불이행 손실	순현금유입액
20X3	2,246	(1,348)	898
20X4	2,246	(1,348)	898
20X5	2,246	(1,348)	898
20X6	2,246	(1,348)	898
PV(6% 이자율)	7,783	(4,670)	3,113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재평가시 -

차) 용자보조비용 (*1) 2,970 대) 용자보조원가총당금 2,970

(*1) 보유 중인 용자금의 원금은 20X2년의 회수액 1,846원을 고려할 때 8,154원(=10,000원 - 1,846원)이다. 용자금 원금 8,154원에서 20X2년 회계연도말 추정 현금흐름인 3,113원을 차감한 금액인 5,041원이 20X2년말 기준으로 재평가한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평가 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인 2,071원에서 2,970원(=5,041원-2,071원)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증액분은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표 10> 20X2년 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

(단위 : 원)

용자금의 원금	10,000
20X2년 원금 회수액	(1,846)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113)
재평가 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2,071)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 설정액	2,970

용자금회계처리 후 20X2 회계연도 말의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 11> 20X2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 원)

자 산	금 액
용 자 금	8,154
용 자 보 조 원 가 총 당 금	(5,041)
순 용 자 금	3,113

④ 용자금의 조정시

국가는 새로운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용자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원리금의 지급유예,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이자율의 조정, 만기연장 등의 형태가 존재하며 용자금 조정이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은 용자금의 조건변경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용자금 실행시 적용한 할인율로 할인한 추정 순현재가치로 변경된다. 용자금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의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용자금 매각시 및 대손시

용자금의 매각이 발생할 경우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 또는 손실은 매각된 용자금의 장부가액에서 순매각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용자금의 매각이익 또는 손실은 당기 용자보조비용에 가감하고, 용자보조비용 차감 후 매각이익 잔액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또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용자금 매각에 대해서는 잠재적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자금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 용자금 잔액을 제각하고, 용자보조원가충당금에서 차감한다. 이때,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04 맺는말

지금까지 용자회계준칙 대상이 되는 용자사업의 정의와 그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회계연도의 국가통합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고 용자회계준칙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용자부터 적용되므로 용자회계준칙은 도입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용자회계준칙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리로 제공되는 용자사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그 차이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 결산 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실체는 저리 용자사업에 대해 이자보조비용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용자회계준칙에 따라 이러한 위험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조원가로 계상된다. 용자회계준칙 적용에 따른 보조원가의 계상은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출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민간부문과는 차별화되는 정부회계 상의 특수개념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저리 용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원가 및 재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중요한 계정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01 국가 통합 결산 후기

현지용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_3149.7567 / e-mail_hyunjy@kicpa.or.kr

1 머리말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전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기금·기업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기금 등 국가회계 실체의 개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목적인 것이다.

2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사항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통합과정에서의 내부거래 제거를 통해 자산·부채의 과대 및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를 방지해야 한다. 즉, 중앙관서 내의 국가회계 실체 간 내부거래는 중앙관서통합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는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각각 상계 제거되어야 정보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경우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관리책임을 지는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예금 가입자와 보험계약자에 있으므로, 관련 자산·부채를 국가통합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표시하여야 국가통합 재정정보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절차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담당자는 2월말까지 중앙관서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는 소관 회계·기금을 포함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주체인 기획재정부는 국가통합결산 사전준비작업, 국가통합 수정분개 도출, 국가통합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격적인 국가통합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앙관서 결산서 검토 및 결산관련 요청자료 배포 등 국가통합결산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기 전에 중앙관서 결산서의 오류 사항을 검토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과 중앙관서 결산담당자에게 결산관련 요청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둘째,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국고금회계 및 국세징수활동표 통합, 내부거래제거 등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에 반영할 국가통합 수정분개를 도출해야 한다.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독립된 하부회계로서 국고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관리회계를 의미한다. 국가의 재정 중 일반·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발생 시 국고에 불입되고 국고에서 지출되는 회계처리를 국고금회계를 통해 수행하는데, 이러한 국고금회계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가통합결산 시에 국가통합재무제표에 포함된다.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작성하는 표로서, 국세 및 관세 징수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이의 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통합 결산과정에서 국세징수활동표의 수익은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되고 처분은 국가순자산변동표 상의 항목과 상계 제거되므로, 국가통합 결산서에는 국세징수활동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거래 제거는 디브레인에서 수행한 내부거래 자동제거 내역을 확인하고, 미 제거된 부분에 대해 엑셀을 통해 수동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앙관서 간 채권·채무 및 손익거래를 상계 제거함으로써,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 및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공채의 자기국(공)채로의 계정 재분류, 순자산변동표 재원의조달및이전 항목의 국가재정운영표 대체 등을 통해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국가통합 수정분개 사항들을 도출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출한 국가통합 수정분개를 반영하여 국가통합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완성한다. 즉,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단순 통합하고 국가통합 수정분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통합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절차를 마무리한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목적, 작성 시 고려사항, 그리고 작성절차를 통해 왜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과정을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시에는 결산 일정이 지금보다 대폭 단축되어 중앙관서 결산보고서가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이를 통합한 국가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가 5월말까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결산 일정의 단축, 그리고 내년이 국가통합재무제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해임을 감안할 때, 법정제출기한 준수 등 원활한 국가통합결산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기금·기업특별회계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02 『사회기반시설 실사추진 현황 및 주요현안』 워크숍(6.14) 후기

유동훈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6 / e-mail_blacksky21@kicpa.or.kr

1 개요

6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가회계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국가회계 사회기반시설 실사추진 현황 및 주요현안’이라는 주제 하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국유재산과, 국가회계기준센터,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2009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실사현황에 대해 알리고 2011년 재무제표 계상을 위해 향후 업무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한 실무자 워크숍이었다. 주요 참석자들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회기반시설 담당자 및 지방국토관리청, 항만청, 어업지도사무소, 철도공단 등과 같은 일선관서의 실무자로 구성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중앙관서의 정책담당자와 해당자산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책임

지는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업무관련자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보니 본부 위주의 실사추진 및 가격평가 논의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들은 쉽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업무담당자들에게 현재까지의 실사추진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향후 업무추진 시 담당자들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② 발표 주제 및 내용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5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는 ‘국가회계 사회기반시설 업무추진 현황’으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김완수 사무관이 발표하였다.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침마련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인식요건 및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수량실사와 가격평가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추진 현황 및 중앙관서와 일선관서 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덧붙였다. 끝으로 김완수 사무관은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기반시설 재무제표 계상방안’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한소영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한소영 연구원은 사회기반시설의 실사현황을 요약하고 실사완료방안 마련 배경 및 업무협의회의 등으로 확정된 실사완료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토지·건물·구축물에 대한 가격평가 방법이었다. 사회기반시설의 가격평가 원칙은 공정가액이나 공정가액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방법인 ‘상각후대체원가법’의 산정사례를 통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용연수 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한소영 연구원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가상각 제외요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하면서 2011년 8월경에 마련할 예정인 「사회기반시설 통합회계처리지침」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임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는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이상호 교수가 진행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개념의 정의와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발표는 국내 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사례를 비교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기술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산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상호 교수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기반시설 축, 정보관리 축, 생애주기 축으로 구성된 지식베이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GIS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항만과 같은 자산의 위치정보 등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축, 도면·문서와 같은 2차원적인 정보와 각 자산의 지형정보 및 구성요소를 3차원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4단계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축, 자산관리를 계획 및 설계 단계·시공 단계·유지

관리 단계 등으로 분류하는 생애주기 축 등을 한번에 구현할 수 있는 ‘To-Be 모델’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에 대한 제도의 도입을 자산관리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네 번째 발표는 “국유재산 결산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안태석 사무관이 진행하였다. 안태석 사무관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로·항만 등 공공용재산의 결산 업무추진 방안을 설명하였다. 국유재산 결산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중앙관서 및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국유재산 TF팀을 구성하여 결산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정태섭 주무관이 “국토해양부 소관 사회기반시설 실사현황과 향후 관리방향”이란 주제로 워크숍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일선관서 담당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태섭 주무관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센터를 설립하여 2011년 7월부터 수행할 예정인 사회기반시설 각 자산별 실사완료방안에 대한 진행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주도함으로써 대장정비의 일관성과 업무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특성상 재산관리부서 뿐만 아니라 실제 건설 및 유지·보수를 주관하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었을 때, 보다 정확한 대장생성이 가능하여 올바른 자산현황이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워크숍을 마치며

워크숍 이후 국가회계기준센터 및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가격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는 등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협조를 위한 워크숍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기반시설 관련한 의사결정에 모든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워크숍처럼 실제 업무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실제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이나 실무자 워크숍 같은 기회가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지사항

김상노 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오는 9월 1일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정착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당일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참석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 9. 1.(목), 14:30~17:30
- 장소 : 사학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
- 참석신청방법 : ① 「www.nasc.or.kr 접속 → 주요일정 → 포럼·세미나」에서 신청
② 국가회계기준센터 02-3149-7560 (담당 전승진)으로 전화 신청

정부회계저널 논문 접수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연간2회 발행하는 「정부회계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저널 발간일정 : 연간 2회
- 논문접수 : 연중 수시
 -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F 국가회계기준센터
 - TEL : 02-3149-7560(담당자_전승진) - FAX : 02-3149-7570 - E-mail : nasc@kicpa.or.kr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또한 오피니언란에 게재할 글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기획재정부위탁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기관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1년 7월 29일 발행